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 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이 개정(법률 제20118호, 2024. 1. 23. 공포, 2025. 1. 24. 시행)됨에 따라,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제작·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,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을 유역(지방)환경청장에게 위임하며,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2항제11호 중 “법 제87조제3항제3호의3·제4호·제4호의2·제4호의3·제5호·제6호·제8호”를 “법 제87조제2항제5호·제3항제3호의3·제4호·제4호의2·제4호의3·제5호·제6호·제8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33조의2 및 법 제33조의3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

별표 5 제2호버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폐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버. 법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·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	법 제87조 제2항제5호	300	400	500
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· 위탁) ① (생 략)	제6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·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<u>법 제87조제3항제3호의3 · 제4호 · 제4호의2 · 제4호의3 · 제5호 · 제6호 · 제8호</u>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(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 · 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)	11. <u>법 제87조제2항제5호·제3항제3호의3 · 제4호 · 제4호의2 · 제4호의3 · 제5호 · 제6호 · 제8호</u> ----- ----- ----- ---
12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삭 제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.	⑥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<u>법 제33조의2 및 법 제33조의3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</u> <u>증에 관한 업무</u>

⑦ · ⑧ (생략)

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수도권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19